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50

발의연월일: 2022. 11. 21.

발 의 자:서영교·김의겸·서영석

신정훈 · 양기대 · 위성곤

유정주 • 이동주 • 이용빈

임오경 · 전혜숙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 성이 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현 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 략)

027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